

## 「더샵 프리엘라」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는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 지역 3개월'(공급신청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약 미접수시 당첨자선정 및 계약 불가)**
- ※ 예비 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예비 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 포함)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으며, 선정 된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 접수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약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기관 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 사업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더샵 프리엘라 홈페이지([더샵 프리엘라.kr](http://더샵프리엘라.kr))**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사이버 건본주택”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사이버 건본주택 내 VR, 안내동영상, 마감재 리스트들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 02-2636-0324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I

###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 21층 6개 동 총 324세대 중 일반분양 138세대
- 입주예정시기 : 2029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전용 85㎡이하 주택건설량 10%범위)

(단위 : ㎡, 세대)

| 주택형<br>(전용면적기준) | 약식<br>표기 | 세대별 계약면적(㎡) |         |          |         |          | 배정<br>세대수<br>(예비) |
|-----------------|----------|-------------|---------|----------|---------|----------|-------------------|
|                 |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공용    | 계약<br>면적 |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          |                   |
| 044.9800        | 44       | 44.9800     | 15.6280 | 60.6080  | 8.8620  | 105.7190 | 2(10)             |
| 059.9700A       | 59A      | 59.9700     | 20.3670 | 80.3370  | 11.8160 | 140.4830 | 1(5)              |
| 059.9900B       | 59B      | 59.9900     | 20.1720 | 80.1620  | 11.8190 | 140.3270 | 2(10)             |
| 059.9900C       | 59C      | 59.9900     | 20.5720 | 80.5620  | 11.8190 | 140.7270 | 1(5)              |
| 074.9900A       | 74A      | 74.9900     | 24.0930 | 99.0830  | 14.7740 | 174.2910 | 3(15)             |
| 074.9900B       | 74B      | 74.9900     | 25.4930 | 100.4830 | 14.7750 | 175.6920 | 1(5)              |
| 084.9900A       | 84A      | 84.9900     | 26.8140 | 111.8040 | 16.7450 | 197.0420 | 3(15)             |
| 084.9800B       | 84B      | 84.9800     | 27.5210 | 112.5010 | 16.7430 | 197.7290 | 1(5)              |
| -               | 계        |             |         |          |         |          | 14(70)            |

※ 상기 일정은 분양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본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

당첨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확정자 또는 당첨자'로 선정 · 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예비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 · 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납입금액 요건을 갖추신 분.(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분)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8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입주자저축 요건 의무 없음.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참조) 더샵프리엘라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 구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분양권 등"은 주택수에 포함 (단,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한차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함)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4.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제외)

##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 하며, 확인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여부,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명단으로 관리되며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

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대주 및 주택소유여부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 가능하시므로 추첨 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III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IV

##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10년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 당첨자발표일부터 3년(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까지)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접수)일에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 및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에서 접수(10:00 ~ 14:00)가 가능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함)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인터넷청약 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민간사전청약 및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에 최종 통지된 대상자는 통지 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신청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공급 우선순위 및 추첨 동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지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 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라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부적격자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며, 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동일 세대내 중복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중복 청약이 불가하며, 중복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예비추천자는 주택형별 접수현황에 따라 추가당첨자로 선정 또는 특별공급 통합 예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통합 예비당첨자로 선정 시 예비순번이 결정됩니다.
-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5.06.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V

## 건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현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번지 일원



건본주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10 더샵갤러리

- 건본주택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10 더샵갤러리
- 홈페이지 주소 : 더샵 프리엘라.kr
- 분양문의 대표번호 : 02-2636-0324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